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0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맹성규
전종덕 · 조계원 · 오세희
조인철 · 문금주 · 노종면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

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법률 제 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제52조제2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7. (생 략)	제4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 략) <u>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u> 21. ~ 26. (생 략) ③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9. (현행과 같음) <u><삭 제></u> 21. ~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